

대법원 1995. 2.14. 선고 93다53054 【집행판결】

[공1995.3.15.(988),1321]

판시사항

-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서 번역문은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 [2] "가"항의 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재판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서 번역문은 공적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certified)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위에서 열거한 번역관 또는 외교관들에 의해서 중재판정 등이 직접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직접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임이 증명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증명이란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라는 사실확인일 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번역의 정확성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9.14. 92나34829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3. 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2.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참조법령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제4조 제2항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전문

1995.2.14. 93다53054 집행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애드비조 엔 브이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해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2나348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1973.2.8.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②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중재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뉴욕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에서 번역문은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certified)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위에서 열거한 번역관 또는 외교관들에 의해서 중재판정 등이 직접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직접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임이 증명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증명이란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라는 사실확인일 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번역의 정확성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로써 정당하게 증명된 중재판정 등본, 정당하게 증명된 중재합의 등본 및 이에 대한 각 외교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갑 제7호증의 1의 73쪽 이하 중 제2항, 제4항, 제6항에는 원문에 없는 부분이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문을 설명하려는 추가기재에 불과하여 의미가 없는 것이다)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절차의 공동당사자인 사◇디국 리야드 소재 소외 사◇디 상사대표 및 계약회사(Saudi Establishment for Commercial Representation and Contracting Ltd., "SECRC" 이하 소외 사◇디회사라 한다)를 제외하고 원고회사 단독으로 제기한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형식상 원고회사 1인임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회사는 스스로의 지위 및 예비적으로 소외 사◇디회사를 대리(on behalf of "SECRC")하는 병존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원고회사에게는 소외 사◇디회사를 위하여 행위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소외 사◇디회사를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부분은 위 중재판정부의 관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외 사◇디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중재판정문 제49항, 제53항), 가사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소외 사◇디회사가 그 공동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뉴욕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중재당사자의 국적에 의할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행해진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다수당사자의 1인에게만 승소의 판정이 부여된 경우 그 승소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단독으로 그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집행판결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재합의의 원시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중재합의와 합체되어 있는 본안계약이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결국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원.피고 사이의 중재약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약정의 실효여부의 판단은 본안에 관한 판단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준하여 그 자체가 중재인(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를 사항인데, 이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으로 위 채권양도 유효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양도행위와 가장 관련이 많은 사◇디법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디국의 분쟁해결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입장을 기초로 사◇디법 아래에서는 위 양도는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준거법의 결정 및 사◇디법 하에서의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판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국 법원이 그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론과 같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당원 1990.4.14.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네덜란드 안틸레스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우리나라 법상의 그것보다 길고 또한 우리나라 소멸시효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외국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1978.11.8. 자 노우하우 실시계약에 따라 보유한 권리는 소외 사◇디회사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중재관할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공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또한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에게 보낸 편지들로서, 이 사건 기술실시료의 지급을 촉구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밖에 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 불공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권리의 행사가 늦었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우리나라 공공질서위배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의 공공질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노우하우계약은 특허권실시계약인데, 특허권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제도이므로, 당사자간의 단순한 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창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마치 개인 사이의 특허권을 창출하는 것과 같고, 또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과 정의관념에도 반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피고회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